

挺身隊배상 거부 근거 없다

日교수 新聞에 「日정부 비판」 기고

日本교토 京都大 日문학부
미즈노 나오키(水野直樹·42) 韓
國大學사범 東京市(과제사)
조교수는 지난달 25일자 아
사히(朝日)신문 기고를 통



미즈노 나오키교수

다음은 미즈노 교수의 對
日정부 논평문 요약.
지난 1월 중순 미야자와
기이치(宮澤喜一) 日本총리의
訪韓에 즈음, 日本정부는 중

설에서도 日本정부는 보상을
유무하는 北韓에 대해 ▲당
시 日정부는 유보하며 ▲유보한
법령에 의거한 행위결과에 대
해서는 피해보상에 응할 수
없다. 그러나 ▲適法하다고 볼
수 없는 행위결과에 대해서
는 「재산·친구권」 문제로 보

그밖에 징용·징병 피해에
대한 日本정부의 견해는 당
시의 유보한 법령에 의거한 것
이므로 보상에 응할 수 없다
는 것이다.
그러나 이러한 日本정부의
견해는 과연 옳은 것인가.
日本정부의 견해가 성립되기

1992 03 01 중앙
지침만 보더라도 이러한 전
제에서 성립될 수 없다.
日帝 때 韓國은 朝鮮總督府

7.3조약시대
韓國에 의한 韓日합방의 결과
韓國이 日本의 식민지가 되
었기 때문이다. 따라서 무조
로 韓國인이 日本국적을 갖고
있었다는 사실을 적용시키는
것은 억지논리가 아닐수 없다.
두 번째는 당시 법령이 韓
國人에게도 日本人에게도 같
은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전
제다. 그러나 당시 韓國인에
게 법률을 제정하는 의회에
관여할 참정권(선거권·피선
권)이 인정되지 않았다는
사실만 보더라도 이러한 전
제는 성립될 수 없다.

실한 극비문서 「內鮮一體의 이
념 및 그 실현양책 要綱」을
보면 朝鮮人の 「皇國臣民化」
정도를 보여 적당한 수준에
이를 경우 議院(국회)이
추천한 대표자를 兩院(국회
원·衆議院)에 보내는 것도 가
능하다고 명시, 「皇國臣民化」
가 실현되지 못한 韓國인에게
는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겠
다는 日本의 속셈을 분명히
하고 있다.

전정일기인 45년8월 유화
정착의 일환으로 衆議院의원
선거법을 개정, 韓國인·臺灣
人이라도 국제 15인 이상을
담임한 사람에 한해 제한적
인 선거권을 부여했으나 총
의원수 4백66명중 韓國인·
臺灣人에게 할당된 의석수는
각각 23석, 5석에 불과했고
그러나 日本의 패전으로 실
시되지 못했었다.

임의로 사과하며 "法" 따른 조치 "발땀만 韓國人 뜻 반영 안된 植民法 원인무효

해 日本정부는 과거 日本의
韓國인에 의한 피해보상을 게
을리 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
중군위안부문제를 현안에 입
하는 日本정부는 일제 당시
저지를 잘못을 반성하고 지
금까지의 잘못된 주장을 시
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군위안부문제를 대한 사과
는 했으나 보상문제의 대하
서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
고있다. 日本정부의 견해는 지
난 65년의 韓日기본조약에서
이를 문제가 일관하지 않거
는 것이다.
한편 北韓 日국교정상화교

살하되 피해의 입증책임은 청
구자측에 있다는 견해를 들
어 거부해왔다.
중군위안부출신 피해자들에
대해서는 「보상」이 아니라 어
디까지나 「재산청구권」의 문
제로 처리하려는 것이 日本정
부의 속셈이다.

위해서는 몇가지 전제가 필
요하다.
첫째는 韓國인도 日本국적
을 지녔기 때문에 日本법령
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
전제다.
韓國인이 日本국적을 갖게
된 것은 지난 1910년부터

가 발하는 명령(制令)과 日
本의회가 제정한 법률(法律)의
법정근거가 된 국가총동원법
등)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.
그러나 이 두가지 법령 모두
韓國인의 의사에 전혀 반영되
지 않았음은 말할 나위없다.
1941년 朝鮮總督府가 작

과 같이 불합리한 것이었음
을 무시한채 「사건건」 법
령을 발파하여 보상의 불
가능하다는 일관된 고집해온 日
本정부의 입장은 미래지향적
인 南北韓과의 관계구축을 위
해 반드시 수정되어야만 한
다. (金國振기자)